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47

발의연월일: 2021. 6. 7.

발 의 자:이명수·김병욱·김태흠

서병수・성일종・이만희

이 영ㆍ이주환ㆍ정동만

최연숙 · 최춘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관·단체의 장 선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명선거 장착을 위해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례가증가하고 있음.

농협·수협 등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함으로써,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킴으로써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이사장 선거의 경우 그 실시 시기가 각 금고마다 달라 선거가 매년 실시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

원회에 의무 위탁하고 이사장 선거를 동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선거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64조의2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64조의2제6항 후단 중 "제25조제6항"을 "제23조의2 중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각 각 보고,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사장 선거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는 이사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장 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 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회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2019년 3월 22일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사장의 임기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사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기가 2025년 3월 20일에 만료되는 이사장 선거는 2025년 3월 12일에 동시 실시하고,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 3월의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 실시하다.
 - ③ 2023년 3월 22일 이후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실시사유가발생한 날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④ 2023년 3월 22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고에서 선출된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임기개시일부터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일(이후 매 4년마다 도래하는 임기만료일을 포함하며, 이하 "동시선거임기만료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하고, 그 임기개시일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동시선거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 1. 제7조에 따라 새로 설립하는 금고
 - 2. 제37조에 따라 합병하는 금고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고는 이사회의결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있다.
- 1. 제37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한 때
 - 가. 이 법에 따라 합병권고 · 요구 또는 명령을 받은 경우
 - 나. 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⑥ 제5항에 따라 이사장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경우 이사장의 임기는 제2항에 따른 동시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에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이사장의 임기가 단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⑧ 제3항 단서에 따라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장의 직무는 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전임 이사장 임기만료일까지,

제6항 후단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선출하지 못한 이사장의 임기만료일까지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대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금고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는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단서	
<u>신설></u>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구ㆍ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
	<u>여야 한다.</u>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생 략)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⑥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	
19조제8항, 제20조제2항, 제21	
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	
지 · 제12호의2 · 제13호 · 제13	
호의2·제14호·제15호, 제21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	
2,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u>제23</u>
제25조제6항 중"이사장과 부	조의2 중 "구·시·군선거관리

이사장"은 "회장, 부회장과 상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	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장"으로 각각 본다.	각각 보고, 제25조제6항
⑦ ~ ⑩ (생 략)	(7) ~ ① (현행과 같음)